1. 의결주문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최근 산업환경 및 제품의 개발·공급 방식 변화에 대응하여 인증심사 체계를 다양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산업표준화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증심사유형의 도입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인증기관 지정절차에 전담기관 참여(안 제4조 및 제5조)

인증기관 지정요건의 세부 심사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고,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지정신청을 받으면 전담기관에 요건 심사를 요청하여 전담기관이 심사계획서 제출·심사·결과 제출을 하도록 하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심사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직접 심사하 수 있도록 함

나. 인증표시 및 표시판 정비(안 제12조)

농수축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표시 특례를 삭제하고, 한국산업표준 뿐 아니라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사항도 표시하도록 하며, 표시판은 인증서에 기재된 사업장에 내걸어 홍보할 수 있도록 통합함

다. 인증심사유형 도입(안 제13조 및 제14조)

인증심사유형을 디형, 이형, 지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심사방법과 심사기준을 별표로 정하며, 품목별·분야별 유형을 적용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심의를 거쳐 공고하고 유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증신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라. 정기심사 대상 및 주기 조정(안 제16조)

정기심사 대상을 디 또는 이형 인증을 받은자로 정하고, 인증제품의 정기심사 주기를 4년으로 조정하되 별표 12 품목의 1년 주기 심사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마. 조사 및 확인조사 절차 정비(안 제17조)

시판품조사·현장조사에 더하여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의 절차·방법을 별표9에서 정하도록 함

바. 수거등 명령 관련 서식 마련(안 제17조의2)

수거등 이행계획서, 수거등 결과보고서 및 보완명령 이행결과보고서의 서식을 정함

사. 전담기관 지정 등(안 제17조의3)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위탁업무의 범위와 지정·지정취소

공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아. 별표·서식 정비

인증심사유형별 심사방법(별표 7의2), 인증심사기준(별표8), 조사·확인조사절차(별표9), 1년주기 심사품목(별표12), 표시판(별표 6·7) 및 관련 별지서식을 정비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의 세부 심사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③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제4조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요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심사계획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

인에게 그 심사계획을 알려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제4항의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심사결과를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직접 심사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한국산업표준”을 “한국산업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장에는 별표 6의 표시판을 내걸고, 서비스 사업장에는 별표 7”을 “인증서에 기재된 사업장에 별표 6”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인증심사기준)”을 “(인증심사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인증심사유형은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5 별표 5의 표준인증심사유형 체계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디(D) 형

2. 이(E) 형

3. 지(G) 형

② 인증심사유형별 심사방법은 별표 7의2와 같다.

③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인증심사유형을 품목별 또는 분야

별로 적용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유형별 인증심사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14조제4항 중 “인증심사기준이”를 “인증심사기준 또는 인증심사유형이”로, “한국산업표준의 개정내용 또는 인증심사기준의 변경내용을 알려 그”를 “그”로, “변경내용에”를 “변경내용을 알려 이에”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받은자”를 “법 제19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3조의 인증심사유형 중 디(D)형 또는 이(E)형의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하며, 정기심사”로, “정기심사로서 제품에 대하여는 공장심사를 받아야 하고, 서비스에 대하여는 사업장심사 및 서비스심사를 받아야 한다”를 “실시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를 “4년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 12에 따른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은 정기심사 외에 1년 주기로 심사(이하 “1년 주기 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년 주기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각 목의 구분에”를 “제1항의”로 한다.

가. 직전 연도에 실시한 정기심사, 이전심사 또는 1년 주기 심사에서 영 별표1의2 2호 나목의 핵심품질 부적합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

우

나. 해당 연도에 정기심사 또는 이전심사를 받는 경우

제17조 중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3항”을 “법 제20조제1항”으로,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시판품조사·현장조사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거등 이행계획서는 별지 제14의2호 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9조제4항에 따른 수거등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14의3호 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보완명령 이행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14의4호 서식에 따른다.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일 것

2. 법 제22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인증기관 및 인증심사원의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계획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지정계획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약

2. 조직·인력 현황 및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기관 또는 단체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법 제22조의2제1항제6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민원 및 상담 지원

2. 인증제도의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지원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증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전담기관의 명칭

2. 소재지

3. 수행업무

4. 지정일 또는 지정취소일

제18조의 제목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을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및 단체표준서비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체표준제품은”을 “단체표준제품 또는 단체표준서비스는”으로, “갖춘 제품으로”를 “갖추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생산 실적이 있는 제품”을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실적이 있는 제품 및 서비스”로, “제품으로 확인한 단체표준제품일”을 “것으로 확인한 제품 및 서비스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험장비를”을 “시험장비 또는 서비스 제공 사업장 등을”로, “단체표준제품일”을 “단체표준제품 또는 서비스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을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제품이”를 “제품 또는 서비스가”로, “단체표준제품일”을 “단체표준제품 또는 서비스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단체표준제품을 제조하는”을 “단체표준제품 또는 우수 단체표준서비스를 제조 또는 제공하는”으로, “단체표준제품 확인서”를 “단체표준제품 또는 우수 단체표준서비스 확인서”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단체표준 우수”를 “우수 단체표준서비스, 단체표준 우수”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0조의4제2항”을 “영 제30조

의5제2항”으로 한다.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우수기업등의 지정·지원 및 지정취소 등) ① 법 제31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산업표준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산업표준의 활용 수준 및 활용 성과 등 한국산업표준에 대한 기여도

2.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수준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우수기업등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등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우수기업등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등은 제2항의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우수기업등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 기업등에게 통보하고,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의 유효기간은 통보한 날부터 4년으로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한 우수기업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우수기업등 지정표지 제공

2. 우수기업등 지정된 후 최초로 받는 정기심사 주기를 2년의 범위에서 연장

3. 우수기업등에 대한 홍보

⑥ 제5항에 따른 지정표지를 받은 자가 법 제31조의5제3항에 따라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우수기업등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지를 지체 없이 제거하여야 한다.

별표 1 중 “(제4조제4호 관련)”을 “(제4조제1항제4호 관련)”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각각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2호다목 위반행위란 다목 중 “제4조”를 “제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1) 위반행위란 1) 중 “제4조제2호”를 “제4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호 다목2) 위반행위란 2) 중 “제4조제3호”를 “제4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위반행위란 라목 중 “법 제20조”를 “법 제20조제1항”으로, “조사결”을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위반행위란 마목 중 “법 제20조”를 “법 제20조제1항”으로, “조사결”을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차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행정처분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알리고, 그 기간 동안 위반 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별표 6의 제목 중 “공장 표시판 (제12조제3항 관련)”을 “사업장 표시판 (제12조제3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 중 “공장’”를 “사업장’”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품명’”를 “품명(서비스명)’”로 하며, 같은 표 제5호 중 “인증품목이”를 “인증품목 또는 인증서비스 분야가”로, “품목명”을 “품목명(서비스명)”으로 한다.

별표 7을 삭제한다.

별표 7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 중 “(제15조제4항 관련)”을 “(제15조제3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11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현장조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사업무를 수행하여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나. 조사대상 사업장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법 제18조제3항제3의2호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별표 12의 제목 중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품목 (제16조제1항제1호 관

련)”을 “1년 주기 심사 대상품목 (제16조제1항제1호 관련)”으로 한다.

별표 12 중 “공장심사”를 “1년 주기 심사”로 한다.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11호, 14호 14호의2, 14호의3, 14호의4, 16호, 16호의2, 17호, 18호, 19호, 20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지정되기 전에 인증기관 지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5조제3항에 따르며, 이 경우 같은 조 제6항 중 “제5항”은 “종전의 제5조제3항”으로 본다.

제3조(정기심사 주기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받아야 하는 정기심사의 기한은 제16조제1항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인증심사유형 적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품목별·분야별 인증심사유형의 적용에 필요한 심의회 심의 및 공고는 이 규칙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②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고된 품목별·분야별 인증심사유형은 그 공고에서 정하는 날부터 적용하며, 그 적용일 전까지는 별표 7의2, 별표8 및 별표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인증심사기준, 인증심사방법 및 정기심사를 적용한다.

제5조(이(E)형 심사유형 공고 품목의 정기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로서 해당 인증 품목에 대하여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E)형의 인증심사유형이 공고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차기 정기심사의 기한까지 별표7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E)형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인증표시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인증표시판은 제12조제3항 및 별표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생략)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기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의 세부 심사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인증기관의 지정절차) ①·② (생 략)	제5조(인증기관의 지정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제4조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요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심사계획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심사계획을 알려야 한다.
<신 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제4항의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심사결과를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직접 심사할 수 있다.
④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 제5항----------.
⑤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⑦ ---------- 제6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2조(제품인증표시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받은 자”라 한다)가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	제12조(제품인증표시 등) ① ----------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 3에 따른 농수축산물 가공식품(이하 “농수축산물 가공식품”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 <단서 삭제>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한국산업표준에서 제품의 품목 또는 서비스의 분야별 특성에 따라 표시하도록 정한 사항	8. 한국산업표준 및 인증심사기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인증받은자는 공장에는 별표 6의 표시판을 내걸고, 서비스 사업장에는 별표 7에 따른 표시판을 내걸어 홍보할 수 있다.	③ ---------- 인증서에 기재된 사업장에 별표 6----------.
제13조(인증심사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13조(인증심사기준 등) ①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인증심사유형은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5 별표 5의 표준인증심사유형 체계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디(D) 형 2. 이(E) 형 3. 지(G) 형

<신 설>	② 인증심사유형별 심사방법은 별표 7의2와 같다.
<신 설>	③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인증심사유형을 품목별 또는 분야별로 적용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유형별 인증심사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14조(인증심사의 절차·방법 등) ①·② (생 략)	제14조(인증심사의 절차·방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④ 인증기관은 제9조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후에 해당 한국산업표준이 개정되거나 별표 8의 인증심사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한국산업표준의 개정내용 또는 인증심사기준의 변경내용을 알려 그 개정내용 또는 변경내용에 적합하도록 인증신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④ ---------- ---------- ---------- -- 인증심사기준 또는 인증심사유형이 ---- 그 ---------- ---------- ---------- ----- 변경내용을 알려 이에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정기심사 및 이전심사의	제16조(정기심사 및 이전심사의

주기・절차・방법 등) ① 인증받은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정기심사로서 제품에 대하여는 공장심사를 받아야 하고, 서비스에 대하여는 사업장심사 및 서비스심사를 받아야 한다.	주기・절차・방법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3조의 인증심사유형 중 디(D)형 또는 이(E)형의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하며, 정기심사--- 실시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제품의 정기심사 주기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단서 신설>	1. ---------- 4년으로 한다. 다만, 별표 12에 따른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은 정기심사 외에 1년 주기로 심사(이하 “1년 주기 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년 주기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가. 별표 12에 따른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품목에 해당하는 제품: 매년. 다만, 정기심사에서 적합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에는 그 다음 1회의 정기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가. 직전 연도에 실시한 정기심사, 이전심사 또는 1년 주기 심사에서 영 별표1의 2 2호 나목의 핵심품질 부적합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나. 가목 외의 제품: 매 3년	나. 해당 연도에 정기심사 또는 이전심사를 받는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에서 적합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후의 정기심사는 이전심사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1항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정기심사 주기를 따른다.	③ ---------- ---------- ---------- ---------- ---------- 제1항의 ---------- ----------.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7조(시판품조사 등의 절차·방법)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9와 같다.	제17조(시판품조사 등의 절차·방법) 법 제20조제1항---------- ---------- 시판품조사·현장조사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
제17조의2(이행계획서의 내용 등) ①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령이행 의무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2. 해당 제품명 및 상표	제17조의2(이행계획서의 내용 등) ①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거 등 이행계획서는 별지 제14의2호 서식에 따른다.

3. 인증번호 및 제조기간 4. 제품 결함의 내용 및 원인 5. 제품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상되는 위해의 내용 6. 제품 결함의 시정내용(결함의 수리, 같은 종류의 물품과의 교환 또는 구입 금액의 환불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시정기간	
②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서의 내용이 해당 제품의 결함을 바로잡기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명령이행 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보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② 영 제29조제4항에 따른 수거 등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14의3호 서식에 따른다.
<신 설>	③ 영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보완명령 이행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14의4호 서식에 따른다.
<신 설>	제17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

	리법인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일 것 2. 법 제22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인증기관 및 인증심사원의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계획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지정계획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약 2. 조직·인력 현황 및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기관 또는 단체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법 제22조의2제1항제6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민원 및 상담 지원 2. 인증제도의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지원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증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전담기관의 명칭 2. 소재지 3. 수행업무 4. 지정일 또는 지정취소일
제18조(우수한 단체표준제품) ① 법 제25조에 따른 우선구매의	제18조(우수한 단체표준제품 및 단체표준서비스) ① --------

대상이 되는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한다.	---------- 단체표준제품 또는 단체표준서비스는 -- 갖추어야 -------.
1. 제20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 인증단체(이하 “인증단체”라 한다)로부터 단체표준 인증을 받고 3개월 이상의 생산실적이 있는 제품 중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영 제6조에 따른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제품으로 확인한 단체표준제품일 것	1. ---------- ---------- ---------- ----------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실적이 있는 제품 및 서비스 -------- ---------- ---------- ---------- ------- 것으로 확인한 제품 및 서비스일 ----
2. 인증단체 중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력 및 시험장비를 확인하여 그 인증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인증단체로부터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단체표준제품일 것	2. ---------- ---------- 시험장비 또는 서비스 제공 사업장 등을 --- ---------- ---------- 단체표준제품 또는 서비스일 -- ----------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제품이 단체표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품질시험을 받아 합격한 단체표준제품일 것	3.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제품 또는 서비스가 --------- ---------- 단체표준제품 또는 서비스일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단체에 대하여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단체표준 우수인증단체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단체표준 우수 인증단체 인정서를 받은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제품을 제조하는 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 ---------- ---------- ---------- ---------- ---------- ---------- 단체표준제품 또는 우수 단체표준서비스를 제조 또는 제공하는 ---------- ------- 단체표준제품 또는 우수 단체표준서비스 확인서---.
③ 그 밖에 우수 단체표준제품 및 단체표준 우수 인증단체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 -- 우수 단체표준서비스, 단체표준 우수 ---------- ---------- ---.
제21조의2(부상 및 증서 서식) ① 영 제30조의4제2항에 따른 수상자별 부상(副賞) 및 증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의2(부상 및 증서 서식) ① 영 제30조의5제2항----------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의3(우수기업등의 지정․지원 및 지정취소 등) ① 법

	제31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산업표준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산업표준의 활용 수준 및 활용 성과 등 한국산업표준에 대한 기여도 2.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수준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우수기업등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등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우수기업등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등은 제2항의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우수기업등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 기업등에게 통보하고,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이 경

	우 지정의 유효기간은 통보한 날부터 4년으로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한 우수기업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우수기업등 지정표지 제공 2. 우수기업등 지정된 후 최초로 받는 정기심사 주기를 2년의 범위에서 연장 3. 우수기업등에 대한 홍보 ⑥ 제5항에 따른 지정표지를 받은 자가 법 제31조의5제3항에 따라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우수기업등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지를 지체 없이 제거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1] 인증업무의 범위(제4조제4호 관련)	[별표1] 인증업무의 범위(제4조제1항제4호 관련)

인증업무의 범위	인증품목(인증분야)
기본	부문기호 A로 분류되는 지정품목
기계	부문기호 B로 분류되는 지정품목
전기전자	부문기호 C로 분류되는 지정품목
금속	부문기호 D로 분류되는 지정품목
광산	부문기호 E로 분류되는 지정품목
건설	부문기호 F로 분류되는 지정품목
일용품	부문기호 G로 분류되는 지정품목
식품	부문기호 H로 분류되는 지정품목
환경	부문기호 I로 분류되는 지정품목
생물	부문기호 J로 분류되는 지정품목
섬유	부문기호 K로 분류되는 지정품목
요업	부문기호 L로 분류되는 지정품목
화학	부문기호 M로 분류되는 지정품목
의료	부문기호 P로 분류되는 지정품목
품질경영	부문기호 Q로 분류되는 지정분야

인증업무의 범위	인증품목(인증분야)
기본	부문기호 A로 분류되는 지정품목
기계	부문기호 B로 분류되는 지정품목
전기전자	부문기호 C로 분류되는 지정품목
금속	부문기호 D로 분류되는 지정품목
광산	부문기호 E로 분류되는 지정품목
건설	부문기호 F로 분류되는 지정품목
일용품	부문기호 G로 분류되는 지정품목
식품	부문기호 H로 분류되는 지정품목
환경	부문기호 I로 분류되는 지정품목
생물	부문기호 J로 분류되는 지정품목
섬유	부문기호 K로 분류되는 지정품목
요업	부문기호 L로 분류되는 지정품목
화학	부문기호 M로 분류되는 지정품목
의료	부문기호 P로 분류되는 지정품목
품질경영	부문기호 Q로 분류되는 지정분야

현 행		개 정 안	
수송기계	부문기호 R로 분류되는 지정품목	수송기계	부문기호 R로 분류되는 지정품목
서비스	부문기호 S로 분류되는 지정분야	서비스	부문기호 S로 분류되는 지정분야
물류	부문기호 T로 분류되는 지정분야	물류	부문기호 T로 분류되는 지정분야
조선	부문기호 V로 분류되는 지정품목	조선	부문기호 V로 분류되는 지정품목
항공우주	부문기호 W로 분류되는 지정품목	항공우주	부문기호 W로 분류되는 지정품목
정보	부문기호 X로 분류되는 지정품목	정보	부문기호 X로 분류되는 지정품목
주 : 이 표에서 "부문기호"란 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의 부문기호를 말한다.		주 : 이 표에서 "부문기호"란 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의 부문기호를 말한다.	

[별표2]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동일하면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던 날 이전 최근 1년간(2. 개별기준의 나목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신 설>

<신 설>

다.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 정도, 그 밖에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령	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4조	지정취소	-	-	-

[별표2]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동일하면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각각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던 날 이전 최근 1년간(2. 개별기준의 나목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차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행정처분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알리고, 그 기간 동안 위반 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마.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 정도, 그 밖에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령	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4조	지정취소	-	-	-

현 행

	제1항 제1호				
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2호	경고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
다. 제4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3호				
1) 제4조제2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2) 제4조제3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라. 법 제20조에 따른 조사결과 인증기관이 고의로 품질불량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인증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4호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	–
마. 법 제20조에 따른 조사결과 인증기관이 중대한 과실로 품질불량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인증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4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

[별표6]

공장 표시판(제12조제3항 관련)



1. 표시판의 크기는 가로 450mm, 세로 300mm로 한다.
2. 'KS 인증 공장'이라는 글자는 고딕체로 한다.
3. '인증번호 및 품명'이라는 글자는 명조체로 한다.
4. 표시문자와 인증마크의 색은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다.
5. 인증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로 450mm, 세로 60mm의 보조 표시판에 인증번호와 품목명을 적어 표시판

개 정 안

	제1항 제1호				
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2호	경고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
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3호				
1)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2)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기관이 고의로 품질불량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인증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4호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	–
마.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기관이 중대한 과실로 품질불량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인증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4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

[별표6]

사업장 표시판(제12조제3항 관련)



1. 표시판의 크기는 가로 450mm, 세로 300mm로 한다.
2. 'KS 인증 사업장'이라는 글자는 고딕체로 한다.
3. '인증번호 및 품명(서비스명)'이라는 글자는 명조체로 한다.
4. 표시문자와 인증마크의 색은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다.
5. 인증품목 또는 인증서비스 분야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로 450mm, 세로 60mm의 보조 표시판에 인증번호와

현 행	개 정 안
아래에 붙인다. 6. 앞판의 문자표시 부분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스틸을 기본으로 한다.	품목명(서비스명)을 적어 표시판 아래에 붙인다. 6. 앞판의 문자표시 부분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스틸을 기본으로 한다.
[별표7] 서비스 사업장 표시판(제12조제3항 관련)  1. 표시판의 크기는 가로 450mm, 세로 300mm로 한다. 2. 'KS 인증 사업장'이라는 글자는 고딕체로 한다. 3. '인증번호 및 인증서비스명'이라는 글자는 명조체로 한다. 4. 표시문자와 인증마크의 색은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다. 5. 인증서비스 분야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로 450mm, 세로 60mm인 보조 표시판에 인증번호와 인증서비스명을 적어 표시판 아래에 붙인다. 6. 앞판의 문자표시 부분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스틸을 기본으로 한다.	[별표7] <삭 제>
[별표7의 2] <신 설>	[별표7의 2] **인증심사유형별 심사방법**(제13조제2항 관련) 제13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유형별로 실시하는 심사[영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장심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제품심사 및 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심사를 말하며, 이하 각각 "공장심사", "품질관리심사" 및 "제품심사"라 한다]의 종류 및 방법은 아래와 같다.

현 행

[별표8]

인증심사기준(제13조 관련)

<신 설>

Ⅰ. 제품분야

1. 일반심사기준

가. 품질경영 관리

심사사항	심사기준
1)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의 추진	가) 경영책임자는 표준화 및 품질경영을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나) 기업의 사내표준 및 관리규정은 한국산업표준(KS)을 기반으로 회사 규모에 따라 적합하게 수립하고 회사 전체 차원에서 적용해야 한다. 다) 품질경영의 추진계획은 해당 한국산업표준(KS) 및 인증심사기준의 요구 수준 이상으로 보증할 수 있도록 입안해야 한다.
2) 사내표준화와 품질	가) 품질경영을 총괄하는 품질경영부서(임직원이 20인 이하 기업은 품질관리담당자)는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나) 제안 활동 또는 소집단 활동 등을 통해 품질개선

개 정 안

인증심사 유형	인증심사	정기심사	이전심사	만료일
디(D)형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	공장심사	공장심사	—
이(E)형	품질관리심사 및 제품심사	품질관리심사 및 제품심사	품질관리심사 및 제품심사	—
지(G)형	품질관리심사 및 제품심사	—	품질관리심사 및 제품심사	인증일로부터 4년

비고

1. 서비스에 대한 인증심사유형 적용시 영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장심사는 위 표의 "품질관리심사"로 보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서비스심사는 "제품심사"로 본다.
2. 지(G)형의 인증을 계속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인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디(D)형 또는 이(E)형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별표8]

인증심사기준(제13조제4항 관련)

이 표에서 유형란의 "O"표시는 해당 심사기준이 적용되는 인증심사유형을 나타낸다. 디(D)형에 적용되는 심사기준은 영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장심사에서, 이(E)형 또는 지(G)형에 적용되는 심사기준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심사에 대해 각각 심사한다.

Ⅰ. 제품분야

1. 일반심사기준

가. 품질경영 관리

심사사항	심사기준	유형 디(D)	유형 이(E)	유형 지(G)
1)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의 추진	가) 경영책임자는 표준화 및 품질경영을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	○
	나) 기업의 사내표준 및 관리규정은 한국산업표준(KS)을 기반으로 회사 규모에 따라 적합하게 수립하고 회사 전체 차원에서 적용해야 한다.	○	○	○
	다) 품질경영의 추진계획은 해당 한국산업표준(KS) 및 인증심사기준의 요구 수준 이상으로 보증할 수 있도록 입안해야 한다.	○		
2)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의	가) 품질경영을 총괄하는 품질경영부서(임직원이 20인 이하 기업은 품질관리담당자)는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		

현 행	개 정 안

심사사항	심사기준
경영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한 활동	활동을 실시하고,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 활동 전반에 대해 자체점검을 1년 이내의 주기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경영에 반영해야 한다.

심사사항	심사기준	유형		
		디 (D)	이 (E)	지 (G)
도입 및 확산을 위한 활동	나) 필요시 품질개선 활동을 실시하고,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 활동 전반에 대해 자체점검을 1년 이내의 주기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경영에 반영해야 한다.	○		

나. 자재 관리

심사사항	심사기준
1) 검사항목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주요 자재명 및 자재별 검사항목을 사내표준에 규정해야 한다. 다만, 주요 자재관리 목록(부품, 모듈 및 재료 등)은 인증기관에 심사 전 제출하여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하며, 심사 후에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품질기준	자재의 품질기준은 생산제품의 품질이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으로 보증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3) 검사방법	자재의 검사방법은 제품의 품질이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으로 보증될 수 있도록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된 품질관리기법을 활용하여 규정해야 한다.
4) 이행사항	사내표준에 따라 자재를 인수할 때에는 품질검사(이하 이 표에서 "인수검사"라 한다) 및 자재관리를 해야 한다.

<비고>

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 또는 양질의 자재라고 인정될 때에는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의 시험성적서, 외부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부품을 자체 제조하는 경우에는 공정관리 기록 등으로 인수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2. 인증을 받은 기업은 제품의 종류, 공정의 특수성 및 제조기술의 개발에 따라 자재를 대체 또는 생략하거나 검사항목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변경사항을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사항을 인증기관에 제출하지 않고 자재를 대체하거나 생략한 경우, 인증기관은 해당 제품이 한국산업표준(KS)에 현저히 맞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신 설>

나. 자재 관리

심사사항	심사기준	유형		
		디 (D)	이 (E)	지 (G)
1) 검사항목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주요 자재명 및 자재별 검사항목을 사내표준에 규정해야 한다. 다만, 주요 자재관리 목록(부품, 모듈 및 재료 등)은 인증기관에 심사 전 제출하여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하며, 심사 후에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2) 자재 품질기준	자재의 품질기준은 생산제품의 품질이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으로 보증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		
3) 검사방법	자재의 검사방법은 제품의 품질이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으로 보증될 수 있도록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된 품질관리기법을 활용하여 규정해야 한다.	○		
4) 이행사항	사내표준에 따라 자재를 인수할 때에는 품질검사(이하 이 표에서 "인수검사"라 한다) 및 자재관리를 해야 한다.	○	○	○

<비고>

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 또는 양질의 자재라고 인정될 때에는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의 시험성적서, 외부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부품을 자체 제조하는 경우에는 공정관리 기록 등으로 인수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2. 인증을 받은 기업은 제품의 종류, 공정의 특수성 및 제조기술의 개발에 따라 자재를 대체 또는 생략하거나 검사항목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변경사항을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사항을 인증기관에 제출하지 않고 자재를 대체하거나 생략한 경우, 인증기관은 해당 제품이 한국산업표준(KS)에 현저히 맞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3. 이(E)형과 지(G)형의 경우 인증을 신청한 자의 사업장과 다른 곳에서 자재를 인수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때에 해당업체 현장을 통해 심사항목 1)항, 4)항의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 공정·제조설비 관리

다. 공정·제조설비 관리

심사사항	심 사 기 준	유형

현 행

심사사항	심 사 기 준
1) 검사 또는 관리 항목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주요 공정명 및 공정별 검사 또는 관리항목, 주요 제조설비명을 사내표준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2) 검사 또는 공정 관리 방법	제품의 품질이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으로 보증될 수 있도록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된 적절한 관리기법을 적용하여 중간검사 또는 공정관리 방법을 규정해야 한다.
3) 이행사항	공정관리자가 사내표준에 따라 중간 검사·관리를 하여 그 결과를 기록·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제조 작업표준	각 공정에 대하여 사용설비, 작업방법, 작업조건, 작업상의 유의사항 등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비고> 1. 공정에 대해서는 외주가공을 허용하되, 외주가공을 하려는 자는 그 공정에 대한 관리규정을 정하여 제품의 품질이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으로 보증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은 공장심사 시 외주가공 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2. 해당 제품을 생산하기에 적합한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설비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점검, 보수, 윤활관리 등의 관리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다만, 공정관리에서 외주가공이 허용된 경우에는 제조설비를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3. 지정된 설비관리자가 설비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신 설>	

라. 제품 관리

심사사항	심사기준
1) 제품 설계 및 개발 절차·계획	제품의 설계 및 개발 절차를 사내표준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2) 제품 품질 검사 항목	제품의 검사항목 및 품질기준을 구체적으로 사내표준에 규정해야 하고, 제품의 품질기준은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품질검사 항목을 포함하여 그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3) 검사 방법	제품의 검사방법은 제품의 품질이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으로 보증될 수 있도록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된 적절한 검사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개 정 안

		디 (D)	이 (E)	지 (G)
1) 검사 또는 관리 항목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주요 공정명 및 공정별 검사 또는 관리항목, 주요 제조설비명을 사내표준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	○	○
2) 검사 또는 공정관리 방법	제품의 품질이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으로 보증될 수 있도록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된 적절한 관리기법을 적용하여 중간검사 또는 공정관리 방법을 규정해야 한다.	○	○	○
3) 이행사항	공정관리자가 사내표준에 따라 중간 검사·관리를 하여 그 결과를 기록·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4) 제조 작업표준	각 공정에 대하여 사용설비, 작업방법, 작업조건, 작업상의 유의사항 등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		
<비고> 1. 공정에 대해서는 외주가공을 허용하되, 외주가공을 하려는 자는 그 공정에 대한 관리규정을 정하여 제품의 품질이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으로 보증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은 공장심사 시 외주가공 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2. 해당 제품을 생산하기에 적합한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설비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점검, 보수, 윤활관리 등의 관리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다만, 공정관리에서 외주가공이 허용된 경우에는 제조설비를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3. 지정된 설비관리자가 설비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4. 이(E)형과 지(G)형의 경우 인증을 신청한자의 사업장과 다른곳에서 제품을 제조하는 때에는 해당업체 현장을 통해 심사항목 1)항,2)항의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라. 제품 관리

심사사항	심사기준	유형 디 (D)	유형 이 (E)	유형 지 (G)
1) 제품 설계 및 개발 절차·계획	제품의 설계 및 개발 절차를 사내표준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	○	○
2) 제품 품질 검사 항목	제품의 검사항목 및 품질기준을 구체적으로 사내표준에 규정해야 하고, 제품의 품질기준은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품질검사 항목을 포함하여 그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	○	○
3) 검사 방법	제품의 검사방법은 제품의 품질이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으로 보증될 수 있도록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된 적절한 검사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	○	○
4)	가) 사내 표준에 따라 제품의 설계 및 개발	○	○	○

현 행	개 정 안

4) 이행사항	가) 사내 표준에 따라 제품의 설계 및 개발을 이행하고, 관련 활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유지해야 한다. 나) 제품의 품질에 대한 사내 표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공정 개선 및 제품의 품질 향상에 활용해야 한다. <신 설> 다) 제품시험 검사자가 한국산업표준(KS) 및 사내표준에 따라 시험검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비고> 1. 중간검사와 중복되는 제품검사의 항목은 중간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2. 제품이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일정한 주기를 정하여 시험한 외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보유한 경우 그 시험항목에 대하여는 제품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3. 심사원은 제품 시험검사자의 시험 수행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제품의 주요 검사항목에 대한 현장 참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후단신설> 4. 공장심사와 별도로 제품의 설계평가가 필요한 경우,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품목별 인증심사기준에 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마. 시험·검사설비의 관리

심사사항	심사기준
1) 주요 설비명	한국산업표준(KS) 및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주요 시험·검사설비를 포함하여 시험·검사설비명을 사내표준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2) 이행사항	가) 해당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어 있는 품질의 특성과 자재 및 제품을 검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험·검사설비를 보유한 경우에는 설비의 정밀도·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교정을 실시하되, 사용빈도와 측정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실정에 맞는 시험·검사설비의 관리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나) 정밀도와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검사설비의 설치장소가 적정하고, 시험·검사설비의 사용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야 하며, 시험·검사설비 관리자는 시험·검사설비의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시험·검사설비를 보유하지 않아, 외부설비를 사용한

이행사항	을 이행하고, 관련 활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유지해야 한다.			
	나) 제품의 품질에 대한 사내 표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	○	○
	다) 제품의 품질 검사를 실시한 기록을 공정 개선 및 제품의 품질 향상에 활용해야 한다.	○		
	<삭 제>			

<비고>
1. 중간검사와 중복되는 제품검사의 항목은 중간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2. 제품이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일정한 주기를 정하여 시험한 외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보유한 경우 그 시험항목에 대하여는 제품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3. 심사원은 제품 시험검사자의 시험 수행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제품의 주요 검사항목에 대한 현장 참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단, 제품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4. 공장심사와 별도로 제품의 설계평가가 필요한 경우,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품목별 인증심사기준에 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5. 이(E)형과 지(G)형의 경우 인증을 신청한자의 사업장과 다른곳에서 제품을 제조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 현장을 통해 심사항목 2)항, 3)항, 4항)의 나)에 대한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마. 시험·검사설비의 관리

심사사항	심사기준	유형		
		디 (D)	이 (E)	지 (G)
1) 주요 설비명	한국산업표준(KS) 및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주요 시험·검사설비를 포함하여 시험·검사설비명을 사내표준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		
2) 이행사항	가) 해당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어 있는 품질의 특성과 자재 및 제품을 검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험·검사설비를 보유한 경우에는 설비의 정밀도·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교정을 실시하되, 사용빈도와 측정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실정에 맞는 시험·검사설비의 관리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		
	나) 정밀도와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검사설비의 설치장소가 적정하고, 시험·검사설비의 사용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야 하며, 시험·검사설비 관리자는 시험·검사설비의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다) 시험·검사설비를 보유하지 않아, 외부설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품이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규정을 정하고	○	○	○

현 행	개 정 안
경우에는 제품이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규정을 정하고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비고> 1.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품목별 인증심사기준에 주요 시험·검사설비명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2. 제품이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일정한 주기를 정하여 외부설비를 사용하거나 외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로 품질관리를 대신하는 경우 그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검사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다만, 공인시험기관을 제외한 외부설비를 사용한 경우 공장심사 시 외부설비 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비고> 1.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품목별 인증심사기준에 주요 시험·검사설비명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2. 제품이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일정한 주기를 정하여 외부설비를 사용하거나 외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로 품질관리를 대신하는 경우 그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검사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다만, 공인시험기관을 제외한 외부설비를 사용한 경우 공장심사 시 외부설비 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3. 이(E)형과 지(G)형의 경우 인증을 신청한자의 사업장과 다른곳에서 제품을 제조하는 때에는 해당업체 현장을 통해 심사항목 2) 항의 다)에 대한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바. 소비자보호 및 환경·자원관리

심사사항	심사기준
1) 소비자보호	가) 소비자가 제기한 불만사례의 경로를 추적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및 재발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나) 소비자에게 제품의 사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보상에 대해 처리방법을 규정해야 한다.
2) 환경관리	가)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제품 요구사항의 적합성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환경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나) 청정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이 회사 전체적으로 실행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다) 작업능률의 향상과 종업원의 안전 및 복지를 고려한 작업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3) 자원관리	가)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종업원에게 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생산·품질경영부서의 경영간부에 대해 표준화 및 품질경영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실적이 있어야 한다. 나) 품질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춘 품질관리 담당자를 확보해야 한다. 다) 품질관리 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에 대한 계획의 입안 및 추진 (2) 사내표준의 제정·개정 등에 대한 총괄 (3) 제품 및 가공품의 품질수준 평가 (4) 각 공정별 사내표준화 및 품질관리의 실시에 관한 지도·조언 및 부문 간의 조정 (5) 공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과 조치, 개선대책에 관한 지도 및 조언 (6) 종업원에 대한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

바. 소비자보호 및 환경·자원관리

심사사항	심사기준	유형 디(D)	유형 이(E)	유형 지(G)
1) 소비자보호	가) 소비자가 제기한 불만사례의 경로를 추적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및 재발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	○	○
	나) <전단삭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보상에 대해 처리방법을 규정해야 한다.	○	○	○
2) 환경관리	<삭 제>			
	가) 청정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이 회사 전체적으로 실행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		
	나) 작업능률의 향상을 고려한 작업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		
3) 자원관리	가)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종업원에게 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생산·품질경영부서의 경영간부에 대해 표준화 및 품질경영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실적이 있어야 한다.	○	○	
	나) 품질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춘 품질관리 담당자를 확보해야 한다.	○		
	다) 품질관리 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에 대한 계획의 입안 및 추진 (2) 사내표준의 제정·개정 등에 대한 총괄 (3) 제품 및 가공품의 품질수준 평가 (4) 각 공정별 사내표준화 및 품질관리의 실시에 관한 지도·조언 및 부문 간의 조정 (5) 공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과 조치, 개선대책에 관한 지도 및 조언	○		

현 행

	육훈련 추진 (7) 부품을 제조하는 다른 업체에 대한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언 (8) 불합격품 또는 부적합 사항에 대한 조치 (9) 해당 제품의 품질검사 업무 관장

2.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품목별 심사기준

가.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품목별 심사기준은 제1호의 일반심사기준에 다음의 1)부터 6)까지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증기관이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품목별 특성에 적합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한다.

1) 품목별 특성을 고려할 때 제1호의 일반심사기준 중에서 일부 변경이 필요한 사항
2) 품목별 인증을 위한 심사기준, 절차·방법 등 한국산업표준(KS)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
3) 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방식
4) 제품시험 결과에 따른 결함 구분(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
5) 제품인증표시 방법
6) 제품의 인증 구분(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 등

나.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품목별 심사기준의 표지에는 1)부터 4)까지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KS)번호
2) 한국산업표준(KS)명
3) 제정 연월일
4) 개정 연월일(개정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Ⅱ. 서비스 분야

1. 사업장심사기준

가. 서비스 품질경영 관리

심사사항	심사기준
1) 사내 표준화·품질경영의 추진	가) 경영책임자는 표준화와 품질경영을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나) 기업의 서비스 사내표준 및 관리 규정은 한국산업표준(KS)을 기반으로 회사 규모에 따라 적합하게 수립하여 회사 전체 차원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다) 품질경영의 추진계획은 해당 한국산업표준(KS) 및 인증심사기준의 요구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입안해야 한다.
2) 서비스품질의	가) 서비스 품질경영을 총괄하는 품질경영부서는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나) 품질경영을 위한 제안활동 또는 그 밖에 표준화와

개 정 안

	(6) 종업원에 대한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훈련 추진 (7) 부품을 제조하는 다른 업체에 대한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언 (8) 불합격품 또는 부적합 사항에 대한 조치 (9) 해당 제품의 품질검사 업무 관장			

2.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품목별·유형별 심사기준

가.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품목별·유형별 심사기준은 제1호의 일반심사기준에 다음의 1)부터 6)까지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증기관이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품목별·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한다.

1) 품목별·유형별 특성을 고려할 때 제1호의 일반심사기준 중에서 일부_이 필요한 사항
2) 품목별·유형별 인증을 위한 심사기준, 절차·방법 등 한국산업표준(KS)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
3) 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방식
4) 제품시험 결과에 따른 결함 구분(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
5) 제품인증표시 방법
6) 제품의 인증 구분(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 등

나.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품목별·유형별 심사기준의 표지에는 1)부터 4)까지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KS)번호
2) 한국산업표준(KS)명
3) 제정 연월일
4) 개정 연월일(개정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Ⅱ. 서비스 분야

1. 사업장심사기준

가. 서비스 품질경영 관리

심사사항	심사기준	유형 이(E)
1) 사내 표준화·품질경영의 추진	가) 경영책임자는 표준화와 품질경영을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나) 기업의 서비스 사내표준 및 관리 규정은 한국산업표준(KS)을 기반으로 회사 규모에 따라 적합하게 수립하여 회사 전체 차원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
	다) 품질경영의 추진계획은 해당 한국산업표준(KS) 및 인증심사기준의 요구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입안해야 한다.	○
2) 서비스품질의 도입 및 확산	가) 서비스 품질경영을 총괄하는 품질경영부서는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
	나) 품질경영을 위한 제안활동 또는 그 밖에 표준화와 품질경영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체제 전반에 대한 자체점검을 1년 이내의 주기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서비스품질 경영에 반	○

현 행	개 정 안
도입 및 확산 품질경영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체제 전반에 대한 자체점검을 1년 이내의 주기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서비스품질 경영에 반영해야 한다.	영해야 한다.

나. 서비스 운영체계

심사사항	심사기준
서비스 운영체계	가) 서비스 운영체계에 대한 사항을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으로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이에 따라 조직 및 서비스 업무 수행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나) 경영책임자는 서비스 경영이념과 의지를 정립해야 하고, 서비스 경영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다) 고객과 시장의 요구 파악이 체계화되어 있어야 하고, 고객접점(MOT), 고객정보시스템 및 고객의 소리(VOC)에 대한 대응체계를 갖춰 고객 요구사항을 서비스품질 경영활동에 반영해야 한다.

다. 서비스 운영

심사사항	심사기준
서비스 운영	가) 서비스 운영에 대한 사항을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으로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이에 따라 사전 서비스, 서비스 수행 및 사후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 고객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은 해당 서비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하고, 지속적인 새로운 서비스 제공과 타사(타인)가 제공하지 않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갖춰야 한다. 다) 소비자가 제기한 불만사례의 경로를 추적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및 재발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라) 소비자에게 제품의 사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보상에 대한 처리방법을 규정해야 한다.

라. 서비스 인적자원 관리

심사사항	심사기준
서비스 인적자원 관리	가) 서비스 인적자원 관리에 대한 사항을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으로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이에 따라 서비스 수행 인력 및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나) 서비스 종사자에게 서비스 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훈련을 계획·실시해야 하고, 서비스품질경영

나. 서비스 운영체계

심사사항	심사기준	유형 이(E)
서비스 운영체계	가) 서비스 운영체계에 대한 사항을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으로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이에 따라 조직 및 서비스 업무 수행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나) 경영책임자는 서비스 경영이념과 의지를 정립해야 하고, 서비스 경영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
	다) 고객과 시장의 요구 파악이 체계화되어 있어야 하고, 고객접점(MOT), 고객정보시스템 및 고객의 소리(VOC)에 대한 대응체계를 갖춰 고객 요구사항을 서비스품질 경영활동에 반영해야 한다.	○

다. 서비스 운영

심사사항	심사기준	유형 이(E)
서비스 운영	가) 서비스 운영에 대한 사항을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으로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이에 따라 사전 서비스, 서비스 수행 및 사후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
	나) 고객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은 해당 서비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하고, 지속적인 새로운 서비스 제공과 타사(타인)가 제공하지 않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갖춰야 한다.	○
	다) 소비자가 제기한 불만사례의 경로를 추적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및 재발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
	라) 소비자에게 제품의 사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보상에 대한 처리방법을 규정해야 한다.	○

라. 서비스 인적자원 관리

심사사항	심사기준	유형 이(E)
서비스 인적자원 관리	가) 서비스 인적자원 관리에 대한 사항을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으로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이에 따라 서비스 수행 인력 및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
	나) 서비스 종사자에게 서비스 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훈련을 계획·실시해야 하고, 서비스품질경영부서 경영간부에 대해 서비스 표준화 및 품질경영 전문교육기관의 교육 실적이 있어야 한다.	○
	다) 서비스 품질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	○

현 행	개 정 안
부서 경영간부에 대해 서비스 표준화 및 품질경영 전문교육기관의 교육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 서비스 품질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춘 서비스 품질관리담당자를 확보해야 한다. 라) 서비스 품질관리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에 대한 계획의 입안 및 추진 (2) 사내 표준의 제정·개정 등에 대한 총괄 (3) 서비스 품질수준의 평가 (4) 각 서비스 절차별 사내표준화 및 품질관리의 실시에 관한 지도·조언 및 부문 간의 조정 (5) 서비스 및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과 조치, 개선 대책에 관한 지도 및 조언 (6)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서비스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훈련 추진 (7) 고객(소비자)의 불만에 대한 관리 및 조치 (8)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 및 지도	도록 자격을 갖춘 서비스 품질관리담당자를 확보해야 한다. 라) 서비스 품질관리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에 대한 계획의 입안 및 추진 (2) 사내 표준의 제정·개정 등에 대한 총괄 (3) 서비스 품질수준의 평가 (4) 각 서비스 절차별 사내표준화 및 품질관리의 실시에 관한 지도·조언 및 부문 간의 조정 (5) 서비스 및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과 조치, 개선 대책에 관한 지도 및 조언 (6)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서비스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훈련 추진 (7) 고객(소비자)의 불만에 대한 관리 및 조치 (8)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 및 지도 ○

마. 시설·장비, 환경 및 안전 관리

심사사항	심사기준
시설·장비, 환경 및 안전 관리	가) 시설·장비, 환경 및 안전 관리에 대한 사항을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으로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이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나) 서비스 종사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환경관리와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다) 환경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환경오염물질(대기, 수질, 토양, 진동, 소음, 폐기물 등), 실내 공기질 등에 대한 친환경 경영을 실시해야 한다.

2. 서비스심사기준

심사사항	세부 심사항목
1) 고객이 제공받은 사전 서비스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사전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정해야 한다.
2) 고객이 제공받은 서비스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정해야 한다.
3) 고객이 제공받은 사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사후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정하여야 한다.

마. 시설·장비, 환경 및 안전 관리

심사사항	심사기준	유형 이(E)
시설·장비, 환경 및 안전 관리	가) 시설·장비, 환경 및 안전 관리에 대한 사항을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으로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이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
	나) 서비스 종사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환경관리와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다) 환경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환경오염물질(대기, 수질, 토양, 진동, 소음, 폐기물 등), 실내 공기질 등에 대한 친환경 경영을 실시해야 한다.	○

2. 서비스심사기준

심사사항	세부 심사항목	유형 이(E)
1) 고객이 제공받은 사전 서비스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사전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정해야 한다.	○
2) 고객이 제공받은 서비스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정해야 한다.	○
3) 고객이 제공받은 사후 서비스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사후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정하여야 한다.	○

3.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분야별·유형별 심사기준

가.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분야별·유형별 심사기준

현 행	개 정 안
후 서비스	
3.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분야별 심사기준 가.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분야별 심사기준은 제1호의 사업장심사기준 및 제2호의 서비스심사기준에 다음의 1)부터 4)까지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증기관이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분야별 특성에 적합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한다. 1) 분야별 특성을 고려할 때 제1호의 사업장심사기준 및 제2호의 서비스심사기준 중에서 일부 변경이 필요한 사항 2) 분야별 인증을 위한 심사기준, 절차·방법 등을 한국산업표준(KS)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 3) 인증표시의 방법 4) 서비스의 인증 구분 나.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분야별 심사기준의 표지에는 1)부터 4)까지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KS)번호 2) 한국산업표준(KS)명 3) 제정 연월일 4) 개정 연월일(개정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은 제1호의 사업장심사기준 및 제2호의 서비스심사기준에 다음의 1)부터 4)까지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증기관이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분야별 특성에 적합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한다. 1) 분야별·유형별 특성을 고려할 때 제1호의 사업장심사기준 및 제2호의 서비스심사기준 중에서 일부 변경이 필요한 사항 2) 분야별 인증을 위한 심사기준, 절차·방법 등을 한국산업표준(KS)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 3) 인증표시의 방법 4) 서비스의 인증 구분 나.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분야별 심사기준의 표지에는 1)부터 4)까지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KS)번호 2) 한국산업표준(KS)명 3) 제정 연월일 4) 개정 연월일(개정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별표9]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제14조제5항 및 제17조 관련) 1. 공장심사 가. 인증기관은 별표 8 I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인증신청 품목의 특성과 심사원의 전문성, 시험능력 및 인증신청인과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2명 이상의 인증심사반을 편성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원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나. 신규 인증의 경우 신청인의 제조공장에서 최근 3개월간,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심사의 경우에는 심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심사일까지의 기간의 공장 운영에 관한 기록(시제품 생산기록을 포함한다)이 별표 8 Ⅰ의 인증심사기준에 맞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 인증기관은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등의 사유로 공장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현장방문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서류심사 또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화상회의 등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별표9]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제14조제5항 및 제17조 관련) 1. 공장심사 가. 인증기관은 별표 8 I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인증신청 품목의 특성과 심사원의 전문성, 시험능력 및 인증신청인과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2명 이상의 인증심사반을 편성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원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나. 신규 인증의 경우 신청인의 제조공장에서 최근 1개월 이상,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심사의 경우에는 심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심사일까지의 기간의 공장 운영에 관한 기록(시제품 생산기록을 포함한다) 일부를 별표 8 Ⅰ의 인증심사기준에 맞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 인증기관은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등의 사유로 공장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현장방문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서류심사 또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화상회의 등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인증심

현 행	개 정 안
인증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라. 인증심사원은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하는 공장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라. 인증심사원은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하는 공장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마.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원으로부터 공장심사결과보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하는 심사결과 판정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마.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원으로부터 공장심사결과보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하는 심사결과 판정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바.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사항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바.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사항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인증 받은 자가 이미 인증 받은 품목 내에서 그 종류·등급·호칭·모델이 다른 제품에 대하여 인증신청을 한 경우에는 별표 8 Ⅰ제1호 가목 및 바목	1) 인증 받은 자가 이미 인증 받은 품목 내에서 그 종류·등급·호칭·모델이 다른 제품에 대하여 인증신청을 한 경우에는 별표 8 Ⅰ제1호 가목 및 바목
2) 인증신청에 따른 공장심사에는 적합하였으나, 제품심사에는 적합하지 아니하여 인증불가 통보를 받은 후 해당 제품에 대하여 1년 이내에 다시 인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8 Ⅰ제1호 가목 및 바목	2) 인증신청에 따른 공장심사에는 적합하였으나, 제품심사에는 적합하지 아니하여 인증불가 통보를 받은 후 해당 제품에 대하여 1년 이내에 다시 인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8 Ⅰ제1호 가목 및 바목
3) 삭제 <2017. 1. 26.>	3) 삭제 <2017. 1. 26.>
<신 설>	4) 인증신청인이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 또는 같은 수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국제 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국가표준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의 인증을 받은 경우 별표 8 Ⅰ제1호가목. 다만 그 인증이 유효하고 인증범위에 인증신청 품목을 제조하는 공장이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
4)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증심사 면제에 관하여 정하여 고시한 경우	5)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증심사 면제에 관하여 정하여 고시한 경우
사. 인증신청 후부터 인증서 발급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한국산업표준(KS) 및 심사기준이 변경된 경우 인증기관은 신청자에게 개정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을 요구하고 개정된 심사기준에 따라 재심사를 할 수 있다.	사. 인증신청 후부터 인증서 발급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한국산업표준(KS) 및 심사기준이 변경된 경우 인증기관은 신청자에게 개정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을 요구하고 개정된 심사기준에 따라 재심사를 할 수 있다.
아. 인증기관은 제1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1년 주기 공장심사를 하는 경우 제27조에 따른 품목별 품질관리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 인증기관은 제1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1년 주기 심사를 하는 경우 제27조에 따른 품목별 품질관리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 인증기관은 다목에 따른 심사를 통하여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이 가능해지면 즉시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공장을 방문하도록 하여 해당 공장이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자. 인증기관은 다목에 따른 심사를 통하여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이 가능해지면 즉시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공장을 방문하도록 하여 해당 공장이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신 설>	차. 인증기관은 주요 공정이 외주가공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제16조에 따른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그 외주가공 업체의 사업장에서 해당 공정의 관리 상태를 확인(이하 "현장확인"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현 행	개 정 안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외주가공 업체가 해당 공정을 포함하는 품목에 대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기관이 실시한 현장확인의 결과가 적합이고 그 현장확인을 실시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신 설>	2. 품질관리심사 가. 인증기관은 제1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이(E)형·지(G)형이 적용되는 품목에 대하여 영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품질관리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나. 인증심사반의 편성 및 인증심사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호가목을 준용한다. 다. 품질관리심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신청인의 사업장: 신청인이 인증신청 품목의 설계·개발, 품질기준의 수립, 위탁생산의 관리 등을 통하여 제품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이를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실시하며, 별표 8 Ⅰ의 인증심사기준 중 이(E)형 또는 지(G)형에 적용되는 사항 2) 인증신청 품목을 제조하는 공장: 해당 공장이 신청인의 사내표준에 제품을 제조·검사할 수 있는 기술적 생산조건을 갖추고 이를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실시하며, 별표 8 Ⅰ의 인증심사기준 중 자재·공정·제품 및 시험·검사설비의 관리 등 제조·검사의 이행과 관련되는 사항 라. 심사의 대상이 되는 운영기록 등에 관하여는 제1호나목을 준용한다. 마.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의 심사방법 및 그에 따라 인증한 제품에 대한 현장확인에 관하여는 제1호 다목 및 자목을 준용한다. 바. 품질관리심사결과 보고서의 작성·제출 및 적합 여부의 판정에 관하여는 제1호 라목 및 마목을 준용한다. 사. 심사사항의 일부 생략, 한국산업표준 및 심사기준이 변경된 경우의 처리 및 1년주기 심사 시의 지원에 관하여는 제1호 바목·사목 및 아목을 준용한다. 아. 신청인은 품질관리심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자. 인증기관은 주요 공정이 외주가공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제16조에 따른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그 외주가공 업체의 사업장에서 해당 공정의 관리 상태를 확인(이하 "현장확인"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현 행	개 정 안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외주가공 업체가 해당 공정을 포함하는 품목에 대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기관이 실시한 현장확인의 결과가 적합이고 그 현장확인을 실시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제품심사 가. 인증심사원은 심사대상 제품의 시료(試料)를 신청인의 제품제조공장에서 채취하여 봉인(封印)한 후에 지방중소기업청장 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거나 같은 수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국제 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은 공인시험·검사기관(이하 "공인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품질시험 의뢰서를 제출하여 그 제품의 품질시험을 의뢰해야 한다. 다만, 제품의 특성상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제품의 생산과 관련된 서류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제품의 품질을 심사할 수 있다. 나. 인증심사원은 가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등의 사유로 제품제조공장을 현장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화상회의 등을 통하여 선택한 시료를 신청인으로 하여금 봉인하도록 한 후에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장에게 품질시험을 의뢰하는 등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제품심사를 할 수 있다. 다. 인증심사원은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별표 8 Ⅰ제2호의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품목별 심사기준의 '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방식'에 따라 제품의 인증 구분(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별로 채취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대상 공장에서 생산한 시료로 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2년 이내에 발급받은 제조업체명이 기재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항목의 품질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1) 시험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시험항목의 경우 2) 인증심사 시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인증을 받은 시험항목으로서 한국산업표준(KS) 요구수준 이상의 경우 라. 인증심사원은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공인시험·검사기관에 품질시험을 의뢰할 때에는 시료의 운반을 위하여 신청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마. 가목에도 불구하고 시료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심사원은 신청인의 제품제조공장 현장	3. 제품심사 가. 인증심사원은 심사대상 제품의 시료(試料)를 신청인의 제품제조공장에서 채취하여 봉인(封印)한 후에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거나 같은 수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국제 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은 공인시험·검사기관(이하 "공인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품질시험 의뢰서를 제출하여 그 제품의 품질시험을 의뢰해야 한다. 다만, 제품의 특성상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제품의 생산과 관련된 서류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제품의 품질을 심사할 수 있다. 나. 인증심사원은 가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등의 사유로 제품제조공장을 현장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화상회의 등을 통하여 선택한 시료를 신청인으로 하여금 봉인하도록 한 후에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장에게 품질시험을 의뢰하는 등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제품심사를 할 수 있다. 다. 인증심사원은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별표 8 Ⅰ제2호의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품목별 심사기준의 '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방식'에 따라 제품의 인증 구분(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별로 채취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대상 공장에서 생산한 시료로 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2년 이내에 발급받은 제조업체명이 기재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항목의 품질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1) 시험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시험항목의 경우 2) 인증심사 시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인증을 받은 시험항목으로서 한국산업표준(KS) 요구수준 이상의 경우 라. 인증심사원은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공인시험·검사기관에 품질시험을 의뢰할 때에는 시료의 운반을 위하여 신청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마. 가목에도 불구하고 시료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심사원은 신청인의 제품제조공장 현장에

현 행	개 정 안
에서 제품의 품질을 시험할 수 있다. 1) 시료가 무거운 물건이거나 성질상 운반이 곤란한 경우 2) 공장이 외국에 있는 경우로서 현지에는 공인시험·검사기관이 없는 경우 3) 국내에 그 시료에 대한 시험·검사장비를 갖춘 공인시험·검사기관이 없는 경우 바. 공인시험·검사기관은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품질시험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KS) 및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0호서식의 시험성적서에 명시하여 인증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서 제품의 품질을 시험할 수 있다. 1) 시료가 무거운 물건이거나 성질상 운반이 곤란한 경우 2) 공장이 외국에 있는 경우로서 현지에는 공인시험·검사기관이 없는 경우 3) 국내에 그 시료에 대한 시험·검사장비를 갖춘 공인시험·검사기관이 없는 경우 바. 공인시험·검사기관은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품질시험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KS) 및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0호서식의 시험성적서에 명시하여 인증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3. 사업장심사 가. 인증기관은 별표 8 II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인증신청 서비스 분야의 특성과 심사원의 전문성, 시험능력 및 인증신청인과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2명 이상의 인증심사반을 편성해야 한다. 나. 신규인증의 경우 신청인의 사업장에서 최근 3개월간,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의 경우에는 심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심사일까지의 기간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록이 별표 8 Ⅱ의 인증심사기준에 맞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 사업장심사에 합격하고 서비스심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서비스심사 불합격 판정 후 6개월 이내에 서비스인증 재신청 시 사업장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신 설>	4. 사업장심사 가. 인증기관은 별표 8 II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인증신청 서비스 분야의 특성과 심사원의 전문성, 시험능력 및 인증신청인과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2명 이상의 인증심사반을 편성해야 한다. 나. 신규인증의 경우 신청인의 사업장에서 최근 3개월간,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의 경우에는 심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심사일까지의 기간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록이 별표 8 Ⅱ의 인증심사기준에 맞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사항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장심사에 합격하고 서비스심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서비스심사 불합격 판정 후 6개월 이내에 서비스인증 재신청 시 사업장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2) 인증신청인이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 또는 같은 수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국제 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국가표준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의 인증을 받은 경우 별표 8 Ⅱ 제1호가목. 다만 그 인증이 유효하고 인증범위에 인증신청 분야의 사업장이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 3)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증심사 면제에 관하여 정하여 고시한 경우
라. 인증심사원은 심사를 끝냈을 때에는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하는 사업장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라. 인증심사원은 심사를 끝냈을 때에는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하는 사업장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마.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원으로부터 사업장심사 결과보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하는 심사결과 판정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마.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원으로부터 사업장심사 결과보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하는 심사결과 판정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4. 서비스심사 가. 인증심사원은 실제 서비스 사업장에서 일반 소비자의 입장으로 서비스 이행 실태를 심사해야 한다. 나. 인증심사원 2명이 합동으로 1일간 심사를 하고 서비스심사 결과보고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5. 서비스심사 가. 인증심사원은 실제 서비스 사업장에서 일반 소비자의 입장으로 서비스 이행 실태를 심사해야 한다. 나. 인증심사원 2명이 합동으로 1일간 심사를 하고 서비스심사 결과보고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5.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등의 방법·절차 제17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는 제1호나목 및 마목, 제2호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 제4호가목 및 나목을 준용한다. <후단신설>	6.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등의 방법·절차 제17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는 제1호나목 및 마목, 제3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 제4호나목부터 마목까지, 제5호가목 및 나목을 준용한다. 다만, 이(E)형 또는 지(G)형 인증받은자 대상으로 현장조사 시 위탁 제조공장(해당되는 경우)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를 준용한다.
<신 설>	7.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절차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는 인증받은자의 다른 사업장 및 주된 사무소에서 실시하며, 제4호 나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5호 가목·나목을 준용한다.
<신 설>	8. 확인조사의 방법·절차 가. 확인조사는 법 제15조제3항·제4항, 법 제16조제3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자의 공장·사업장·사무소 또는 해당 제품·서비스의 판매·유통 장소에서 실시한다. 나. 확인조사는 다음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제품·용기·포장·납품서·보증서 또는 광고물의 표시 내용 확인 2) 제조·판매·유통에 관한 서류·기록의 확인 3) 제조 공장·사업장·사무소 등의 관련 설비 및 관련 서류·기록의 확인 다. 확인조사의 사전통지 및 증표의 제시에 관하여는 법 제2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다. 라. 확인조사를 하는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은 확인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조사일시·조사장소, 조사대상, 확인된 사실과 그 근거자료 등이 포함된 확인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관행정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6. 인증업무의 온라인 처리 인증기관은 인증의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인증 기업별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인증과정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9. 인증업무의 온라인 처리 인증기관은 인증의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인증 기업별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인증과정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7. 그 밖에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0. 그 밖에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11]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정지의 기준(제15조제4항 관련)	[별표11]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정지의 기준(제15조제3항 관련)

위반행위	법적근거	행정처분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법 제18조제3항제1호	자격취소
2.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가. 심사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으로 인하여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나. 심사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심사와 무관한 영업활동을 한 경우 다. 심사대상 사업장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라. 심사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심사 전에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을 한 경우	법 제18조제3항제2호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3. 인증심사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품질불량인 제품 또는 서비스가 법 제15조제1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 제18조제3항제3호	자격취소
<신 설>		

위반행위	법적근거	행정처분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법 제18조제3항제1호	자격취소
2.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가. 심사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으로 인하여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나. 심사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심사와 무관한 영업활동을 한 경우 다. 심사대상 사업장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라. 심사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심사 전에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을 한 경우	법 제18조제3항제2호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3. 인증심사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품질불량인 제품 또는 서비스가 법 제15조제1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 제18조제3항제3호	자격취소
4.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현장조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사업무를 수행하여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나. 조사대상 사업장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법 제18조제3항제3의2호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5.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법 제18조제	자격취소

현 행			개 정 안		
4.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18조제3항제4호	자격취소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항제4호	
5. 인증심사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심사원증을 대여한 경우 가. 2회 사용 또는 대여한 경우 나. 1회 사용 또는 대여한 경우 다. 인증심사원증 대여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 제18조제3항제5호	자격취소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6. 인증심사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심사원증을 대여한 경우 가. 2회 사용 또는 대여한 경우 나. 1회 사용 또는 대여한 경우 다. 인증심사원증 대여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 제18조제3항제5호	자격취소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별표12]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품목(제16조제1항제1호 관련)

1년마다 공장심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으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공공의 안전과 인증제품의 품질수준 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1. 삭제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검사의 전부를 생략하는 가스용품
3.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 등 또는 같은 법 제89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 중 안전인증 또는 신고가 면제되는 보호구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생략하는 재료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및 별표 4에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또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6. 법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검정·시험·인증 또는 형식승인이 면제되는 품목
7.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해당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안전에 위해(危害)를 끼친다고 인정하는 품목

[별표12]

1년 주기 심사 대상품목(제16조제1항제1호 관련)

1년마다 1년 주기 심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으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공공의 안전과 인증제품의 품질수준 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1. 삭제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검사의 전부를 생략하는 가스용품
3.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 등 또는 같은 법 제89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 중 안전인증 또는 신고가 면제되는 보호구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생략하는 재료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및 별표 4에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또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6. 법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검정·시험·인증 또는 형식승인이 면제되는 품목
7.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해당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안전에 위해(危害)를 끼친다고 인정하는 품목

[별표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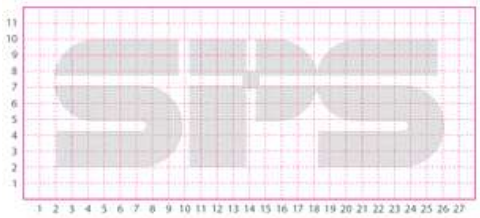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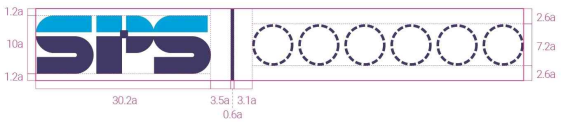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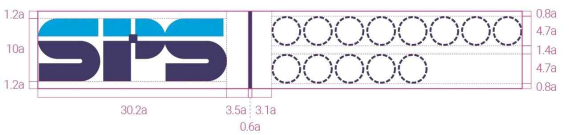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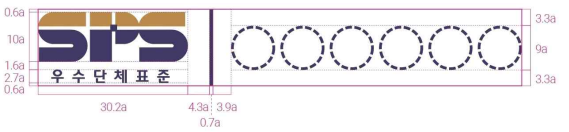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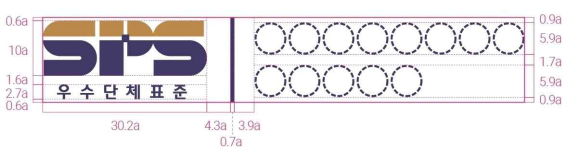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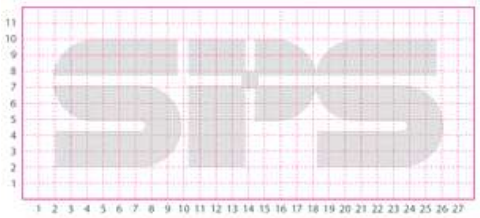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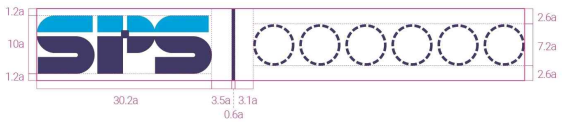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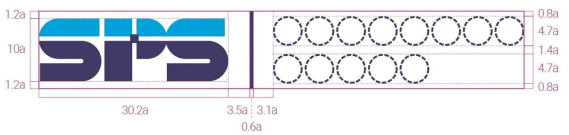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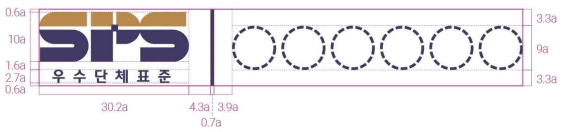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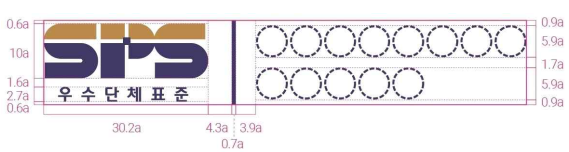
단체표준 인증표시 도표(제20조제2항제6호 관련)

Ⅰ. 단체표준 인증표시

[별표13]

단체표준 인증표시 도표(제20조제2항제6호 관련)

Ⅰ. 단체표준 인증표시

현 행	개 정 안
1. 표시 가. 기본형 <단체표준 인증제품·서비스 표시>  <우수 단체표준제품 표시>  <작도법>  나. 인증단체명 표기형 <단체표준 인증제품·서비스 표시 - 인증단체명 8자 이내>  <단체표준 인증제품·서비스 표시 - 인증단체명 9자 이상>  <우수 단체표준제품 표시 - 인증단체명 8자 이내>  <우수 단체표준제품 표시 - 인증단체명 9자 이상>  2. 표시대상	1. 표시 가. 기본형 <단체표준 인증제품·서비스 표시>  <우수 단체표준 제품·서비스 표시>  <작도법>  나. 인증단체명 표기형 <단체표준 인증제품·서비스 표시 - 인증단체명 8자 이내>  <단체표준 인증제품·서비스 표시 - 인증단체명 9자 이상>  <우수 단체표준 제품·서비스 표시 - 인증단체명 8자 이내>  <우수 단체표준 제품·서비스 표시 - 인증단체명 9자 이상>  2. 표시대상

현 행	개 정 안
가. 단체표준 인증제품·서비스 표시: 제20조제1항에 따른 단체로부터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제공하는 단체표준 인증제품·서비스 나. 우수 단체표준 표시: 제20조제1항에 따른 단체로부터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자 중 제18조제2항에 따라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제조하는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표시방법 가. 기본형 1) 색상 (가) "SPS" 표시 상부 1/3은 시안(cyan)색 , 하부 2/3는 남색으로 한다. 우수 단체표준제품 표시의 경우 상부 1/3은 금색으로 한다. (나) 시안색은 CMYK C100(PANTONE 299 C), 남색은 CMYK C100 M90 Y25(PANTONE 2747 C), 금색은 CMYK C5 M35 Y75 K25 (PANTONE 873 C)로 한다. 시안색·남색·금색이 표시 대상 제품 등의 색상과 같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다른 색으로 할 수 있다. 2) 크기: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 등의 크기를 고려하여 적절한 크기로 인증표시를 표현할 수 있다(가로와 세로 길이의 비율은 유지해야 한다). 나. 인증단체명 1) 색상: 인증단체명과 세로구분선은 남색으로 한다. 2) 서체: 국문서체는 LH Bold, 영문서체는 양평군체 Bold로 한다. 3) 그 밖의 사항 (가) 인증단체명은 두 줄로 표기할 수 있다. (나) 표시대상 제품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세로구분선을 생략하거나 인증단체명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Ⅱ. 단체표준 인증 공장 표시판 1. 표시 가. 기본형 <단체표준 인증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표시판>	가. 단체표준 인증제품·서비스 표시: 제20조제1항에 따른 단체로부터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제공하는 단체표준 인증제품·서비스 나. 우수 단체 표준 표시: 제20조제1항에 따른 단체로부터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자 중 제18조제2항에 따라 우수 단체표준제품·서비스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제조·제공하는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서비스 3. 표시방법 가. 기본형 1) 색상 (가) "SPS" 표시 상부 1/3은 시안(cyan)색 , 하부 2/3는 남색으로 한다. 우수 단체표준 제품·서비스 표시의 경우 상부 1/3은 금색으로 한다. (나) 시안색은 CMYK C100(PANTONE 299 C), 남색은 CMYK C100 M90 Y25(PANTONE 2747 C), 금색은 CMYK C5 M35 Y75 K25 (PANTONE 873 C)로 한다. 시안색·남색·금색이 표시 대상 제품 등의 색상과 같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다른 색으로 할 수 있다. 2) 크기: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 등의 크기를 고려하여 적절한 크기로 인증표시를 표현할 수 있다(가로와 세로 길이의 비율은 유지해야 한다). 나. 인증단체명 1) 색상: 인증단체명과 세로구분선은 남색으로 한다. 2) 서체: 국문서체는 LH Bold, 영문서체는 양평군체 Bold로 한다. 3) 그 밖의 사항 (가) 인증단체명은 두 줄로 표기할 수 있다. (나) 표시대상 제품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세로구분선을 생략하거나 인증단체명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Ⅱ. 단체표준 인증 공장(사업장) 표시판 1. 표시 가. 기본형 <단체표준 인증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사업장) 표시판>

현 행	개 정 안
 <우수 단체표준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표시판>	 <우수 단체표준 제품·서비스를 제조하는 공장(사업장) 표시판>
	
2. 표시대상 가. 단체표준 인증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 표시판: 제20조제1항에 따른 단체로부터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 나. 우수 단체표준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표시판: 제20조제1항에 따른 단체로부터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자 중 제18조제2항에 따라 우수 단체표준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2. 표시대상 가. 단체표준 인증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 표시판: 제20조제1항에 따른 단체로부터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 나. 우수 단체표준 제품·서비스를 제조(제공)하는 공장(사업장) 표시판: 제20조제1항에 따른 단체로부터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자 중 제18조제2항에 따라 우수 단체표준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나 우수 단체표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
3. 표시방법 가. 기본형 1) 표시판의 크기는 가로 450mm, 세로 290mm로 한다. 2) '단체표준 인증 공장(사업장)' 및 '우수 단체표준 인증 공장'의 서체는 LH Bold로 하며, 크기는 각각 120pt 및 105pt로 한다(1pt = 0.35mm). 3) 인증단체명, 인증번호 및 인증품목(표준)명을 표기할 때 색상은 남색으로 하고, 국문서체는 LH Bold, 영문서체는 양평군체 Bold로 한다. 4) 인증번호 및 인증품목(표준)명 글자의 크기는 45pt로 한다. 5) 모든 표기 요소는 앞판을 기준으로 가운데로 정렬한다. 6) 재질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하며, 뒷판의 색상은 단체표준 인증공장·사업장의 경우 남색으로,	3. 표시방법 가. 기본형 1) 표시판의 크기는 가로 450mm, 세로 290mm로 한다. 2) '단체표준 인증 공장(사업장)' 및 '우수 단체표준 인증 공장(사업장)'의 서체는 LH Bold로 하며, 크기는 각각 120pt 및 105pt로 한다(1pt = 0.35mm). 3) 인증단체명, 인증번호 및 인증품목(표준)명을 표기할 때 색상은 남색으로 하고, 국문서체는 LH Bold, 영문서체는 양평군체 Bold로 한다. 4) 인증번호 및 인증품목(표준)명 글자의 크기는 45pt로 한다. 5) 모든 표기 요소는 앞판을 기준으로 가운데로 정렬한다. 6) 재질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하며, 뒷판의 색상은 단체표준 인증공장·사업장의 경우 남색으로,

현 행	개 정 안
우수 단체표준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경우 금색으로 도장한다.	우수 단체표준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또는 우수 단체표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의 경우 금색으로 도장한다.
나. 보조 표시판을 추가하는 경우: 인증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보조 표시판에 인증번호와 표준명을 적어 표시판 아래에 부착한다. 1) 보조 표시판의 크기는 가로 435mm로, 세로는 최소 60mm로 한다. 표시하려는 인증품목의 개수에 따라 세로의 길이는 늘릴 수 있다. 2) 보조 표시판은 기본형 표시판의 오른쪽 끝에 맞추어 부착한다.	나. 보조 표시판을 추가하는 경우: 인증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보조 표시판에 인증번호와 표준명을 적어 표시판 아래에 부착한다. 1) 보조 표시판의 크기는 가로 435mm로, 세로는 최소 60mm로 한다. 표시하려는 인증품목의 개수에 따라 세로의 길이는 늘릴 수 있다. 2) 보조 표시판은 기본형 표시판의 오른쪽 끝에 맞추어 부착한다.
[별표14] **수수료 및 비용**(제2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별표14] **수수료 및 비용**(제2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인증기관 지정신청의 경우 50만원(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자가 인증업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10만원)	1. 인증기관 지정신청의 경우 50만원(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자가 인증업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10만원)
2. 인증심사,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의 경우	2. 인증심사,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의 경우

구 분	금 액
가. 기본 수수료	○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감가상각비 등 인증기관의 운영을 위한 실비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농축산물가공식품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산물가공식품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한 금액
나. 인증심사원 출장비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한다. ○ 출장기간은 제품인증의 경우에는 공장심사에 필요한 일수, 서비스인증의 경우에는 사업장심사에 필요한 일수 및 서비스심사에 필요한 일수(별표 9에 따라 심사항목의 과반수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1일)와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인원은 2명으로 산정한다.
다. 공장심사비	○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매년 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중 사업부문별 고급기술자 노임단가를 평균한 값(만원 단위 미만 절사)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농축산물가공식품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산물가공식품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달리 정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공장심사비 산정의 기간은 심사에 필요한 일수로 하고, 공장심사비의 산정 인원은 2명으로 한다. 다만,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이동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에는 이동에 필요한 일수의 2분의1을 공장심사비로 추가할 수 있다.
<신 설>	

구 분	금 액
가. 기본 수수료	○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감가상각비 등 인증기관의 운영을 위한 실비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농축산물가공식품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산물가공식품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한 금액
나. 인증심사원 출장비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한다. ○ 출장기간은 제품인증의 경우에는 공장심사 또는 품질관리심사에 필요한 일수, 서비스인증의 경우에는 사업장심사에 필요한 일수 및 서비스심사에 필요한 일수(별표 9에 따라 심사항목의 과반수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1일)와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인원은 2명으로 산정한다.
다. 공장심사비	○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매년 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중 사업부문별 고급기술자 노임단가를 평균한 값(만원 단위 미만 절사)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농축산물가공식품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산물가공식품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달리 정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공장심사비 산정의 기간은 심사에 필요한 일수로 하고, 공장심사비의 산정 인원은 2명으로 한다. 다만,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이동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에는 이동에 필요한 일수의 2분의1을 공장심사비로 추가할 수 있다.
라.품질관리심사비	○ 제2호의 다목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장심사는 품질관리심사로 본다.

현 행	개 정 안
라. 제품시험 수수료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거나 같은 수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국제 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에서 정한 시험 수수료	마. 제품시험 수수료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거나 같은 수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국제 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에서 정한 시험 수수료
마. 시료 운반·조작비 ○ 시료의 운반 및 조작에 필요한 실비	바. 시료 운반·조작비 ○ 시료의 운반 및 조작에 필요한 실비
<비고> 1. 별표 9 제1호사목에 따라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추가 심사에 따른 비용은 인증기관이 부담한다. 2. 별표 9 제2호라목에 따라 현장에서 제품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14 제2호라목에 따른 제품시험 수수료의 2분의1을 감면한다. 3. 인증기관의 장은 제23조제2항의 수수료 납부대상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하여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비고> 1. 별표 9 제1호사목에 따라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추가 심사에 따른 비용은 인증기관이 부담한다. 2. 별표 9 제3호마목에 따라 현장에서 제품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14 제2호마목에 따른 제품시험 수수료의 2분의1을 감면한다. 3. 인증기관의 장은 제23조제2항의 수수료 납부대상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하여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별지5]

제 호

인 증 기 관 지 정 서

1. 기 관 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인증업무의 범위:

「산업표준화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위 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소관 행정기관의 장 직인

[별지5]

제 호

인 증 기 관 지 정 서

1. 기 관 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인증업무의 범위:

「산업표준화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6항에 따라 위 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소관 행정기관의 장 직인

[별지6]

인증대상 [] 품 목 [] 서비스 분야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

[별지6]

인증대상 [] 품 목 [] 서비스 분야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

현 행	개 정 안

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0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기관명 또는 단체명	④ 전화번호	
	⑤ 주소		
⑥ 신청 제품 또는 신청서비스 분야		⑦ 표준번호	<신 설>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대상 품목(서비스 분야)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소관 행정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지정사유서 1부	수수료 없 음

작 성 방 법

1. 단체인 경우에는 ①란 및 ②란에 대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을 각각 적습니다.
2. 행정기관인 경우에는 ①란 및 ②란을 적지 아니합니다.
3. 개인인 경우에는 ③란을 적지 아니합니다.

<신 설>

처 리 절 차

신청서 → 접수 → 담당과 → 기술검토 → 실태조사 → 심사기준작성 → 기술심의회 심의 → 결재 → 공고

신청인 / 처리기관: 소관 행정기관의 장 / 신청인 회신

[별지7]

제품인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0일

회사현황	회사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본사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소재지 공장 <신 설>		전화번호
			팩스번호

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0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기관명 또는 단체명	④ 전화번호	
	⑤ 주소		
⑥ 신청 제품 또는 신청서비스 분야		⑦ 표준번호	⑧ 유 형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대상 품목(서비스 분야)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소관 행정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지정사유서 1부	수수료 없 음

작 성 방 법

1. 단체인 경우에는 ①란 및 ②란에 대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을 각각 적습니다.
2. 행정기관인 경우에는 ①란 및 ②란을 적지 아니합니다.
3. 개인인 경우에는 ③란을 적지 아니합니다.
4. ⑧란에는 제13조의 인증심사유형 중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 접수 → 담당과 → 기술검토 → 실태조사 → 심사기준작성 → 기술심의회 심의 → 결재 → 공고

신청인 / 처리기관: 소관 행정기관의 장 / 신청인 회신

[별지7]

제품인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0일

회사현황	회사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본사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소재지 공장 (E형 또는 G형 중 공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현 행	개 정 안
	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 제조공장 정보를 기재)
전자우편	
설립 연월일 / 공장 규모 / 대지: ㎡ / 건물: ㎡	설립 연월일 / 공장 규모 / 대지: ㎡ / 건물: ㎡
인·허가 상황: 형식승인 취득일 / ISO/KSA 9001 인증일 / 외국인증 취득일 / 기타	인·허가 상황: 형식승인 취득일 / ISO/KSA 9001 인증일 / 외국인증 취득일 / 기타
자 본 금 / 백만원 / 1인당 매출액 (A/C) / 백만원	~~자 본 금~~ / ~~백만원~~ / ~~1인당 매출액 (A/C)~~ / ~~백만원~~
매 출 액(A) / 백만원 / 1인당 부가가치액(B/C) / 백만원	~~매 출 액(A)~~ / ~~백만원~~ / ~~1인당 부가가치액(B/C)~~ / ~~백만원~~
경 상 이 익(B) / 백만원 / 1인당 교육훈련 투자비(교육훈련비/C) / 원	~~경 상 이 익(B)~~ / ~~백만원~~ / ~~1인당 교육훈련 투자비(교육훈련비/C)~~ / ~~원~~
종업원수 (C): 경영간부 / 연구개발 투자율 (연구개발비/A) / %	~~종업원수 (C): 경영간부 / 연구개발 투자율 (연구개발비/A)~~ / ~~%~~
종업원수 (C): 기술직, 사무직 / 공정 자동화율(자동화공정/전체공정) / %	~~종업원수 (C): 기술직, 사무직 / 공정 자동화율(자동화공정/전체공정)~~ / ~~%~~
종업원수 (C): 기타 / 설비 자동화율(자동화설비/전체설비) / %	~~종업원수 (C): 기타 / 설비 자동화율(자동화설비/전체설비)~~ / ~~%~~
종업원수 (C): 계 / 한국산업표준 원부자재 사용률 / %	~~종업원수 (C): 계 / 한국산업표준 원부자재 사용률~~ / ~~%~~
품목: 표준명 / 표준번호	품목: 표준명 / 표준번호
품목: <신 설>	품목: 심사유형 □ 디(D)형 □ 이(E)형 □ 지(G)형 ※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고된 품목별 유형에 따름
품목: 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	품목: 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
이미 인증받은 품목: 인증기관 / 인증번호 / 인증일자 / 표준명 / 표준번호	이미 인증받은 품목: 인증기관 / 인증번호 / 인증일자 / 표준명 / 표준번호
품질관리 담당자: 성명 / 생년월일	품질관리 담당자: 성명 / 생년월일
품질관리 담당자: 자격 구분 / 자격증번호	품질관리 담당자: 자격 구분 / 자격증번호
품질관리 담당자: 전자우편	품질관리 담당자: 전자우편

현 행	개 정 안
설비: 제조・가공 설비 <신 설>	설비: 제조・가공 설비 (E형 또는 G형 중 공장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된 위탁 제조공장의 정보를 기재)
설비: 시험・검사 설비 <신 설>	설비: 시험・검사 설비 (E형 또는 G형 중 공장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된 위탁 제조공장의 정보를 기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품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명)** 귀하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품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명)** 귀하
첨부서류: 없음 / 수수료: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서 정하는 수수료	첨부서류: 없음 / 수수료: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서 정하는 수수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 접 수 → 검 토 → 심 사 → 결 재 → 인증서 발급 처리기관: 인증기관	처 리 절 차 신청서 → 접 수 → 검 토 → 심 사 → 결 재 → 인증서 발급 처리기관: 인증기관

[별지8]

서비스인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0일

신청업체현황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성명		담당자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서비스사업장일반현황	사업장명		사업자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대 표 자		담당자	
	사업장규모		설립 연월일	
	신청인증분야	표 준 명	<신 설>	
		표준번호	인증구분	
	자본금	백만원	1인당 매출액 (A/C)	백만원
	매출	백만원	1인당 부	백만원

[별지8]

서비스인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0일

신청업체현황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성명		담당자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서비스사업장일반현황	사업장명		사업자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대 표 자		담당자	
	사업장규모		설립 연월일	
	신청인증분야	표 준 명	심사유형	
		표준번호	인증구분	
	자본금	백만원	~~1인당 매출액 (A/C)~~	~~백만원~~
	매출	백만원	~~1인당 부~~	~~백만원~~

현 행	개 정 안

	액 (A)		가가치액 (B/C)			
	경상 이익 (B)	백만원	1인당 교육 훈련 투자 비(교육훈 련비/C)	원		
	종 사 자 (C)	경영 간부				
		일반직				
		기술직				
		기타				
		계				
	품질 관리 담 당 자	성명	생년월일			
		자격 구분	자격증번호			
		전자우편				
	기 인증 현황	인증 기관	인증번 호	인증 일자	표준 명	표준 번호

「산업표준화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서비스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명) 귀하

첨부 서류	없음	수 수 료 「산업표준화 법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 접 수 → 검 토 → 심 사 → 결 재 → 인증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인증기관

[별지9]

제 호

제 품 인 증 서

1. 제조업체명:
2. 대표자성명:
3. 공장 소재지:

<신 설>

4. 인증제품
 가. 표 준 명:

	액 ~~(A)~~		~~가가치액~~ ~~(B/C)~~			
	경상 이익 ~~(B)~~	백만원	~~1인당 교육~~ ~~훈련 투자~~ ~~비(교육훈~~ ~~련비/C)~~	~~원~~		
	종 사 자 ~~(C)~~	경영 간부				
		일반직				
		기술직				
		기타				
		계				
	품질 관리 담 당 자	성명	생년월일			
		자격 구분	자격증번호			
		전자우편				
	기 인증 현황	인증 기관	인증번 호	인증 일자	표준 명	표준 번호

「산업표준화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서비스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명) 귀하

첨부 서류	없음	수 수 료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 접 수 → 검 토 → 심 사 → 결 재 → 인증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인증기관

[별지9]

제 호

제 품 인 증 서

1. 업체명:
2. 대표자성명:
3. 소재지:

(D형은 제조공장을 기입하고, E형 또는 G형 중 위탁 제조공장을 통해 인증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해당 공장 주소 병행 기입)

현 행	개 정 안
나. 표준번호(<신 설>): 다. 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 「산업표준화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한 결과 한국산업표준(KS)과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므로, 「산업표준화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인증기관의 장** 직인 <신 설>	4. 인증제품 가. 표 준 명: 나. 표준번호(심사유형): 다. 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 「산업표준화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한 결과 한국산업표준(KS)과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므로, 「산업표준화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인증기관의 장** 직인 정기심사기한(G형에 해당하는 경우 만료일):
[별지10]	[별지10]
제 호 **서 비 스 인 증 서** 1. 업 체 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인증서비스 대상 가. 표 준 명: 나. 표준번호(<신 설>): 다. 분 야: 라. 사업장명 및 소재지 o 사업장명: o 소 재 지: 「산업표준화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한 결과 한국산업표준(KS)과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므로,「산업표준화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제 호 **서 비 스 인 증 서** 1. 업 체 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인증서비스 대상 가. 표 준 명: 나. 표준번호(심사유형): 다. 분 야: 라. 사업장명 및 소재지 o 사업장명: o 소 재 지: 「산업표준화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한 결과 한국산업표준(KS)과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므로,「산업표준화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현 행	개 정 안
인 증 기 관 의 장 직인 <신 설>	인 증 기 관 의 장 직인 정기심사기한:

[별지11]

인증서 재발급(변경)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7일)

신청인	업 체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전자우편	
인증품목 (인증서비스)	인증번호		인증일자(년월일)
	표준명		표준번호
	<신 설>		
	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제품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분야(서비스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 연 월 일

[별지11]

인증서 재발급(변경)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7일)

신청인	업 체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전자우편	
인증품목 (인증서비스)	인증번호		인증일자(년월일)
	표준명		표준번호
	심사유형(인증심사 시 받은 심사유형)		
	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제품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분야(서비스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 연 월 일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국산업표준(KS) 인증서의 재발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 귀하

첨부서류	1. 재발급 신청의 경우 인증서 1부(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변경 신청의 경우 가. 인증서 1부 나.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인증서 재발급

처리기관 : 인증기관

[별지14]

□ 정기심사
□ 이전심사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5일

신청인	① 업체명		② 전화번호
	③ 소재지		
	④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전자우편	

인증현황	⑤ 인증번호	⑥ 인증일자 년 월 일
	⑦ 인증 품목(분야)	
	⑧ 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	
	<신 설>	

정기심사 현황	⑨ 직전 정기심사일 년 월 일
심사대상 구분	⑩ 정기심사 또는 이전심사대상 공장심사(), <신 설> 사업장심사 및 서비스심사(), 사업장심사()

「산업표준화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정기심사 또는 이전심사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사 유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국산업표준(KS) 인증서의 재발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 귀하

첨부서류	1. 재발급 신청의 경우 인증서 1부(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변경 신청의 경우 가. 인증서 1부 나.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인증서 재발급

처리기관 : 인증기관

[별지14]

□ 정기심사
□ 이전심사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5일

신청인	① 업체명		② 전화번호
	③ 소재지		
	④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전자우편	

인증현황	⑤ 인증번호	⑥ 인증일자 년 월 일
	⑦ 인증 품목(분야)	
	⑧ 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	
	⑨ 품목별 인증심사유형	

정기심사 현황	⑩ 직전 정기심사일 년 월 일
심사대상 구분	⑪ 정기심사 또는 이전심사대상 공장심사() 품질관리심사 (), 제품심사 () 사업장심사 및 서비스심사(), 사업장심사()

「산업표준화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정기심사 또는 이

현 행	개 정 안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장** 귀하	전심사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 수수료: 인증기관에서 정한 수수료	첨부서류 없음 / 수수료: 인증기관에서 정한 수수료
작 성 방 법 ⑩란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o 인증제품의 정기심사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공장심사"에 ○ 표시 o 인증서비스의 정기심사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사업장심사 및 서비스심사"에 ○ 표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른 경우: "사업장심사"에 ○ 표시 o 인증제품의 이전심사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증제품의 이전심사인 경우: "공장심사"에 ○ 표시 o 인증서비스의 이전심사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증서비스의 이전심사인 경우: "사업장심사 및 서비스심사"에 ○ 표시	작 성 방 법 ⑪란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o 인증제품의 정기심사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디(D)형의 경우 "공장심사", 이(E형) 또는 지(G) 형의 경우 "품질관리심사, 제품심사" 에 ○ 표시 o 인증서비스의 정기심사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사업장심사 및 서비스심사"에 ○ 표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른 경우: "사업장심사"에 ○ 표시 o 인증제품의 이전심사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증제품의 이전심사인 경우: 디(D)형의 경우 "공장심사"에 ○ 표시, 이(E형) 또는 지(G) 형의 경우 "품질관리심사 및 제품심사" 에 ○ 표시 o 인증서비스의 이전심사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증서비스의 이전심사인 경우: "사업장심사 및 서비스심사"에 ○ 표시
처 리 절 차 신청서 → 접 수 → 검 토 → 심 사 처리기관: 인증기관	처 리 절 차 신청서 → 접 수 → 검 토 → 심 사 처리기관: 인증기관
[별지14의2] <신 설>	[별지14의2] **수거등 이행계획서**

사업자	사업자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보고자 (직급)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전자우편 주소

수거등 대상 제품정보	제품명	상표
	표준번호	표준명
	인증번호	종류, 등급, 호칭, 모델
	제조기간	제조수량
	판매기간	판매수량

제품 결함의 내용 및 원인	
제품 결함으로 예상되는 위해 내용	
제품결함의 시정	

현 행	개 정 안
	내용 및 시정기간 \|
	수거등의 조치방법과 기간 \|
	소비자, 판매자 등에게 수거등의 조치계획을 알리기 위한 방법 \|
	「산업표준화법」 제21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수거등의 계획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 1. 해당 품목의 제조기록 사본 2. 판매처별 판매량·판매일 등의 기록
	210㎜×297㎜[백상지(80g/㎡)]
[별지14의3] <신 설>	[별지14의3]

수거등 결과보고서

사업자	사업자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보고자 (직급)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전자우편 주소

수거등 대상 제품정보	제품명	상표
	표준번호	표준명
	인증번호	종류, 등급, 호칭, 모델
	제조기간	제조수량
	판매기간	판매수량

명령 날짜/내용	

현 행	개 정 안
	수거 등 계획 내용 \|
	수거등의 내용 및 실적 \|
	수거등을 하지 못한 제품에 대한 조치계획 \|
	재발 방지 대책 \|
	「산업표준화법」 제21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제품의 수거등을 실시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14의4] <신 설>	[별지14의4] **수거등 보완명령 이행 결과보고서**

사업자	사업자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보고자 (직급)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전자우편 주소

수거등 대상 제품정보	제품명	상표
	표준번호	표준명
	인증번호	종류, 등급, 호칭, 모델
	제조기간	제조수량
	판매기간	판매수량

보완명령 날짜	

현 행	개 정 안
	및 내용
	수거등 보완명령에 대한 이행내용 및 실적
	수거등을 하지 못한 제품에 대한 조치계획
	재발 방지 대책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9조의2제3항 및 시행규칙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제품 수거등의 보완명령 이행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별지16]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제조업체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공장 소재지	전화번호
단체표준번호	단체표준명(종류·등급)

「산업표준화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단체표준제품임을 확인합니다.

[별지16]

우수 단체표준 제품·서비스 확인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제조~~업체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공장 소재지	전화번호
단체표준번호	단체표준명(종류·등급)

「산업표준화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단체표준 제품·서비스임을 확인합니다.

현 행	개 정 안
년 월 일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장 직인	년 월 일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장 직인
[별지16의2] **국가품질명장 증서** 제 호  **국가품질명장 증서** 부문: 소속: 성명: 귀하는 투철한 장인정신으로 품질경영 실천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현장근로자의 귀감이 되어 국가품질	[별지16의2] **국가품질명장 증서** 제 호  **국가품질명장 증서** 부문: 소속: 성명: 귀하는 투철한 장인정신으로 품질경영 실천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현장근로자의 귀감이 되어 국가품질

현 행	개 정 안
명장으로 선정되었기에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4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국가품질명장" 칭호를 부여하고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대 통 령 (직인) 이 증서를 국가품질명장증부에 기입함.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명장으로 선정되었기에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5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국가품질명장" 칭호를 부여하고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대 통 령 (직인) 이 증서를 국가품질명장증부에 기입함.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별지17]

지위승계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자	기관(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인증품목 또는 인증분야 (인증받은자인 경우에만 기재)	인증번호	인증일
	표준명	표준번호 <신 설>
	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제품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분야(서비스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승계사항	승계전	승계후	승계 연월일
기관(업체)명			

[별지17]

지위승계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자	기관(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인증품목 또는 인증분야 (인증받은자인 경우에만 기재)	인증번호	인증일
	표준명	표준번호 (심사유형)
	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제품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분야(서비스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승계사항	승계전	승계후	승계 연월일
기관(업체)명			

현 행

대표자			

「산업표준화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관 행정기관의 장(인증기관의 장) 귀하

구 분	첨부서류	소관 행정기관의 장 (인증기관의 장) 확인 사항	수수료
인증기관의 지위승계인 경우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업을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없음	없음
인증받은 자의 지위승계인 경우	1. 인증서 1부 2.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사업을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신설된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별지18]

인증심사 대장

신청연월일	심사공장			심사구분			인증심사원성명	심사일자	심사결과	심사수수료	비고
	공장명(사업장명)	대표자	주소	표준번호	제품품목(서비스분야)	<신설>					

개 정 안

대표자			

「산업표준화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관 행정기관의 장(인증기관의 장) 귀하

구 분	첨부서류	소관 행정기관의 장 (인증기관의 장) 확인 사항	수수료
인증기관의 지위승계인 경우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업을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없음	없음
인증받은 자의 지위승계인 경우	1. 인증서 1부 2.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사업을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신설된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별지18]

인증심사 대장

신청연월일	심사공장			심사구분			인증심사원성명	심사일자	심사결과	심사수수료	비고
	공장명(사업장명)	대표자	주소	표준번호	제품품목(서비스분야)	인증심사유형					

현 행	개 정 안

[별지19]

품 질 시 험 의 뢰 서	처 리 기 간 30일(표준에 시험기간이 따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간까지로 합니다)

수 신:
제 목: 한국산업표준(KS) 인증 품질시험 의뢰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에 따라 품질시험을 다음과 같이 의뢰하오니 관련 한국산업표준(KS) 및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시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① 표준번호	② 품목	③ 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	④ 시료의 크기 (시료수, 시료번호)	⑤ 시험방법 및 시험항목
				(관련 표준명 및 연도를 표기하되, 시험기준에서 제외되거나 선택되는 시험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기재)

주: 시험기관은 시료 접수 시 시료의 상단에 표시된 봉인 표지의 날인과 이 품질시험 의뢰서의 날인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

년 월 일

의뢰인
소 속:
주 소:
전화번호:
직 위:
성 명: (인)

첨부물: 시험분석 시료

[별지19]

품 질 시 험 의 뢰 서	처 리 기 간 30일(표준에 시험기간이 따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간까지로 합니다)

수 신:
제 목: 한국산업표준(KS) 인증 품질시험 의뢰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9 제3호가목에 따라 품질시험을 다음과 같이 의뢰하오니 관련 한국산업표준(KS) 및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시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① 표준번호	② 품목	③ 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	④ 시료의 크기 (시료수, 시료번호)	⑤ 시험방법 및 시험항목
				(관련 표준명 및 연도를 표기하되, 시험기준에서 제외되거나 선택되는 시험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기재)

주: 시험기관은 시료 접수 시 시료의 상단에 표시된 봉인 표지의 날인과 이 품질시험 의뢰서의 날인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

년 월 일

의뢰인
소 속:
주 소:
전화번호:
직 위:
성 명: (인)

첨부물: 시험분석 시료

현 행	개 정 안
[별지20] (1 면) **시 험 성 적 서 (용)** 시험 의뢰일자: 접수번호: 의 뢰 기 관 명: 소재지(전화번호): 성 명: 1. 표 준 명: 2. 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 3. 시험·검사 수량: 4. 시 험 기 간: 5. 합격 여부 판정: (붙임 시험결과 참조)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마목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시험성적서를 송부합니다. 붙 임: 시험결과 1부. 끝 년 월 일 **시험검사기관의 장** 직인	[별지20] (1 면) **시 험 성 적 서 (용)** 시험 의뢰일자: 접수번호: 의 뢰 기 관 명: 소재지(전화번호): 성 명: 1. 표 준 명: 2. 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 3. 시험·검사 수량: 4. 시 험 기 간: 5. 합격 여부 판정: (붙임 시험결과 참조)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9 제3호바목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시험성적서를 송부합니다. 붙 임: 시험결과 1부. 끝 년 월 일 **시험검사기관의 장** 직인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표준혁신과	
연 락 처	(043) 870 - 5382